

입법예고문

상주시 공고 제2023-649호

상주시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상 주 시 상



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자전거 도난 및 분실,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공영자전거 운영사업(제3조): 운영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개정
- 나.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방법(제10조): 민간단체 기증 대상 신설, 폐기처분 및 위탁 조항 신설
- 다. 자전거 등록 등(제11조의2): 자전거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용품 지급 등 등록 활성화 제도 신설
- 라.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 및 정의를 상위법과 현행에 맞게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 : 교통에너지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연락전화 : 054-537-7392 E-mail : kck22@korea.kr, FAX : 054-537-632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742-706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(교통에너지과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- 1) 제10조의2(공영자전거 운영사업)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(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
- 2) 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3) 제22조(자전거의 등록 등)①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: 2023. 4. 19. ~ 2023. 5. 9.
- 2) 법제 및 규제심사: 기획예산실과 협의됨[기획예산실-6350(2023. 4. 13.)호]
- 3) 비용추계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사: 기획예산실과 협의됨[기획예산실-6350(2023. 4. 13.)호]
- 4) 부패영향평가: 공보감사담당실과 협의됨[공보감사실-3907(2023. 4. 4.)호]
- 5) 공공갈등진단: 총무과와 협의됨[총무과-9069(2023. 3. 30.)호]
- 6) 성별영향평가: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됨[아이여성행복과-9825(2023. 4. 3.)호]
- 7) 물가심사: 투자경제과와 협의됨[투자경제과-10801(2023. 3. 31.)호]